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26. ~ 2023. 1. 2.) 결과,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35만원”을 “38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 당의 지급금액은 월 <u>35만원</u> 으로 한다.	제7조(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) -- ----- ----- <u>38만원</u> ----- 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20